

# 속초 삼호 아파트 [우선분양전환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임대주택 우선분양 전환 후 일반 공급하는 아파트로, 임차인이 거주중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임)

- 본 아파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국민주택인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인터넷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 2. 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22)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속초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본 아파트는 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된 주택으로 임대유기기간이 경과되어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후 일반 공급하는 것임**.
- 각 세대별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입주자가 설치한 부합물은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음.
- 입주일은 기존 임차인 중 미퇴거 세대에 대해서는 퇴거일정에 따라 입주일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존 임차인 및 임대차기간을 승계하는 조건임.
- 본 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마감 등에 대해서는 별도 보수나 수선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함.
- 본 아파트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로 분양하는 주택임. 당점자는 계약 전 반드시 세대 내 시설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벽지,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1995년 10월 23일 사용검사 된 임대주택으로 속초시 속초시 건축디자인과-57120호 (2017.12.15)로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되었음.
- 본 아파트는 정부에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서 세대당 39,906,000원(24,193,548원, 43,26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이 건설업체에서 받았었음.
- 본 아파트는 국민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 임대주택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기간에 있는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본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건축과·39730호(2019.10.17)로 일반분양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속초시 밤골3길 27
  - 대지면적 : 12,292.8㎡
  - 공급규모 : 아파트 7개동 340세대 중 우선분양전환 109세대를 제외한, 당사보유 및 임대사업자보유 총 212 세대  
[특별공급 48세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9세대, 다자녀특별공급 9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4세대, 노부모양육특별공급 2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9.10.22

## 공급대상

(단위 : ㎡)

구분	주택관리 번호	모델 번호	주택형	타입	세대별 면적 (㎡)						세대수								
					공 급 면 적			기타공용 및 주차장	합계	대지지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합계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전 용	주거공용	소 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소계
국민 주택	2019000944	01	39.9060	39	39.9060	10.7700	51.6360	3.7800	54.4560	33.6980	4	4	7	1	7	23	122	145	7
		02	43.2600	43	43.2600	16.0710	60.3720	4.0990	63.4300	36.5300	5	5	7	1	7	25	42	67	3
계											9	9	14	2	14	48	164	212	10

## 공급금액

(단위 : 원)

주택형	동/라인	해당층	세대수	공급가	계약금 - 10%	잔금 - 90% (계약일로부터 1개월)
39.9060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	38	68,000,000	6,800,000	61,200,000
		2	35	68,000,000	6,800,000	61,200,000
		3 ~ 5	72	68,000,000	6,800,000	61,200,000
		6 ~ 10	0	68,000,000	6,800,000	61,200,000
		11 ~ 최상층	0	68,000,000	6,800,000	61,200,000
43.2600	107동	1	8	78,000,000	7,800,000	70,200,000
		2	7	78,000,000	7,800,000	70,200,000
		3 ~ 5	15	78,000,000	7,800,000	70,200,000
		6 ~ 10	25	78,000,000	7,800,000	70,200,000
		11 ~ 최상층	12	78,000,000	7,800,000	70,200,000

## 공통사항

- 상기 주택은 분양 전환한 주택으로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는 세대의 실입주는 기존 임차인과 상호 협의 후 계약만기가 도래된 세입자가 전출한 후 실입주가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회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이는 매수자의 부담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동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3.3058 또는 형별면적(㎡)× 0.3025)

## 분양대금 대출관련

-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로 일정액의 금융기관 용자금에 존재하여 분양 시 매수자에게 대환되어야 하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나,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계약자 본인사정에 의하여 잔금대출이 불가한 분은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체일자에 대하여 별도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비율로 함.

## 공급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입주예정일
일정	2019.10.28.[월]	2019.10.29.[화]	2019.10.30.[수]	2019.11.05.[화]	2019.11.18[월] - 2019.11.20[수] 3일간 (시간 : 10:00 ~ 16:00)	2019. 12. 이후 예정 (기존임차인의 퇴거 일정 에 따라 입주일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인 지하고, 기존 임차인 및 임대차기간을 승계하는 조건)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2you.com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계약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www.ap2you.com)</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li>•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 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li> <li>•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li> <li>•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li> </ul>	속초 삼호아파트 관리사무소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조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li> <li>①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li> <li>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39,9063	43,2600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2	
	장기복무 재대군인	1	1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0	1	1	
	중소기업 근로자	1	1	2	
	장애인	1	1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4	5	9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6	6	11
		일반공급(25%)	1	1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1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7	7	14	
합 계		25	23	48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9세대

#### •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세대주 및 세대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합니다.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518만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재단근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재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전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 가족이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건설지역(속초시) 및 강원도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총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총 영유아 2명	10	
		자녀 총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일치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1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속초시) 및 강원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준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모집공고일 2019.2.25.이후 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6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 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년)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1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자로 아래 ①~⑤호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한다)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가 있는 자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내에 소득세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 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100%)	5,401,814원 이하	6,165,202원 이하	6,699,865원 이하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120%)	6,482,177원 이하	7,398,242원 이하	8,039,838원 이하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원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임.
- ※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년)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 속초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동일지역 거주자 중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특별공급 운용지침」제6조에 의하여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2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 국민주택은 제27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라 전용면적별 순위 순차 적용 한다.
-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 2.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건분주택에 비치,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인터넷 청약시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0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0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일반 특별공급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인터넷 청약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생략
	0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인정서만 인정함(복지카드 불가)
다자녀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0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0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0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0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고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0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공통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 10. 22.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첨사실 삭제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주택형	순위	신청자격
국민주택	전 주택형	1 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2 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자로서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구 분	39.9060	43.2600
일반분양	145	67
합계	212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1.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봄.
2.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4.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5. 주택공유지분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함.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하셔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공유지분으로주택을소유한경우와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④ 제2조제7의2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 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낡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 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축[중건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19.10.28 (월) (APT2you : 08:00~17:3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a href="http://www.ap2you.com">www.ap2you.com</a>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사업주체 건물주택
	1순위	2019.10.29 (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a href="http://www.ap2you.com">www.ap2you.com</a> - 스마트폰 : APT2you 앱
2순위	2019.10.30 (수) 08:00~17:30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a href="http://www.kbstar.com">www.kbstar.com</a>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유([www.ap2you.com](http://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물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유([www.ap2you.com](http://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http://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새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b>[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b> 아파트유 홈페이지( <a href="http://www.ap2you.com">www.ap2you.com</a>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b>[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b>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b>[일반공급 PC 청약시]</b> 국민은행 홈페이지( <a href="http://www.kbstar.com">www.kbstar.com</a>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b>[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b>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유([www.ap2you.com](http://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http://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b>본인 신청시</b>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b>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b>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용)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출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란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없어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유 홈페이지([apt2you.com](http://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등·초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물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 주택,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 정확한 내용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만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새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 11. 05 (화) ~ 2019. 11. 14 (월)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 <a href="http://www.kbstar.com">www.kbstar.com</a>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유 홈페이지( <a href="http://www.ap2you.com">www.ap2you.com</a>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19. 11. 05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대상	계약체결기간	계약체결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2019.11.18.[월] ~ 2019.11.20.[수] 3일간 (시간 : 10:00 ~ 16:00)	당사 분양사무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 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며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 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노부모양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li> <li>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li> <li>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li> <li>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li> </ul>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li> <li>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li> <li>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공고함</li> </ul>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계약 체결

■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input type="checkbox"/>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초본	
	<input type="checkbox"/>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특별공급	<input type="checkbox"/>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input type="checkbox"/>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input type="checkbox"/>		· 대리인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input type="checkbox"/>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신혼부부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input type="checkbox"/>		· 혼인관계증명서	
	<input type="checkbox"/>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반공급	<input type="checkbox"/>		·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input type="checkbox"/>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input type="checkbox"/>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준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부	
	<input type="checkbox"/>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input type="checkbox"/>		·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input type="checkbox"/>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input type="checkbox"/>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10. 22)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공급 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며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는,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속으로 인한 건축사함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납부일에 [ 국민 ]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 또는 이체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계약자(당첨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입금 전 당첨여부 및 계약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계약자(당첨자)의 책임임]

금 용 기 관	납 부 계 좌	예 금 주
[ 국민 ]은행	[ 358801-04-196607 ]	정기산업 주식회사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19 년 12월 경

- 기존임차인의 퇴거 일정에 따라 입주일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존 임차인 및 임대차기간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지하주차장,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등

## ■ 기타

### ▣ 유의사항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권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속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합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최초 선택일(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②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3개월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 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와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는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도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 해약 조치함.

####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야 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상가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가 완료된 상태임.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기존주택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과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는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사업주체 : 정기산업 주식회사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18층 (법인등록번호:110111-1981847)

● 분양문의 : 강원도 속초시 발골3길 27 속초삼호아파트 / 02-566-9476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임차인의 퇴거 일정에 따라 입주일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존 임차인 및 임대차기간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